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퇴직 및 해촉 등의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 수정〉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03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입법형식 및 발의배경	2
2. 개정안의 체계 및 주요쟁점	5
3. 개별법 검토	11
가. 「검찰청법」	11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
다. 「공증인법」	16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
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2
바. 「변호사법」	25
사. 「외국법자문사법」	30
참고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 제출 현황	35
참고2. 개정 대상 규정 중 한글화 이전 心身障礙 규정 법률	3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1.
3. 회 부 일 : 2025.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형식 및 발의 배경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공무원의 퇴직사유,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및 전문자격 취득자의 업무를 위한 등록거부 등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수정하려는 내용의 법안으로, 다수의 개별법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임.

법률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여러 법률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단순 용어 개정이나 체계 정비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경우에 다수의 법률 일괄개정 방식을 사용¹⁾하는데, 개정안은 개정취지가 동일한 다수의 개정 법률안이 별개의 입법절차를 거침으로써 발생하는 입법의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같은 각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개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됨.

- ‘장애’라는 용어가 법률 및 일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령에

1)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156.

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18462, 대안)의 국회 심사과정²⁾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사유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³⁾,

장애인의 장애는 한 개인의 특성일 뿐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법에는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이 존재하여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일으키고, 장애가 한 개인의 능력을 한정하는 원인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총 14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이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원안의결 된 바 있음.

2)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 회의록, 2015.12.31., p.5.~6.

3)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6. 6. 2.

4) 파이낸셜 뉴스, ‘이종성 의원, 심신장애로 인한 해임 개정안 발의’, 2022. 4. 23.
(<https://www.fnnews.com/news/202204232109086497>)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은 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수행 곤란 사유인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간으로 판단할지 모호하고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심신장애가 생길시 위원 등의 조속한 대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⁵⁾이 제시되었음.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해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54개의 법률을 정비하는 총 11건의 제정안⁶⁾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표현을 일괄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현재 각 법률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5) 정무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2. 9., p.6~7.

6) [참고자료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 제출 현황

2. 개정안의 체계 및 주요쟁점

-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이 퇴직·해촉·등록 거부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표현을 수정하고 있는데, 개별법의 각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개별법의 ‘심신장애’ 해당 사유>

사유	법률명	조항	현행	개정안
공무원의 퇴직사유	검찰청법	§39의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15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의 해촉 등 사유	공증인법	§85⑦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호사법	§94⑥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9.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자격 취득자 영업 등록 거부 등 사유	변호사법	§8①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외국법자문사법	§12①1 §13②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각 개별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된 표현은 장애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편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을 통한 법문 표현의 수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심신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심신장애(心身⁷⁾ 障碍)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인 심신장애(心神障碍⁸⁾⁹⁾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 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심신장애(心神障碍)만을 퇴직·해촉·등록 거부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를 각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각 직무의 특성별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 대상 법률 중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만

7)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心身)은 마음과 몸을 아울러 이르는 말임.

8)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心神障碍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9)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심신장애(心神障碍)를 정신장애로 정비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심신장애(心神障礙)’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서는 한자 병기 없이 ‘심신장애’로만 되어 있으며,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 「변호사법」의 변호사 등록거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 해임 관련 규정의 경우 법률용어 한글화 이전 ‘心身障礙’를 퇴직명령 등의 사유로 규정¹⁰⁾하고 있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의사가 진단 또는 소견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의료법에 진료기록 제공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¹¹⁾,

10) [참고자료2] 개정 대상 규정 중 한글화 이전 心身障礙를 규정한 법률

1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

퇴직·해촉·등록 거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의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을 시 퇴직·해촉·등록 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건강상 이유로 인한 특정한 공무원의 퇴직 등 사유 및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전문 자격의 취소 사유 등을 다양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공무원 퇴직 등 사유 관련 입법례>

건강상 이유 관련 조문 내용	대상·사유	관련법률 및 조항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찰관 해임사유	특별감찰관법 제14조제1항
	특별검사(보) 해임사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감사위원 면직사유	감사원법 제8조제1항
	국가인권위원 퇴직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외국인보호위원 해촉사유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8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 해촉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5
	원자력안전위원 면직사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 7.~19. (생략)

건강상 이유 관련 조문 내용	대상·사유	관련법률 및 조항
<u>중대한 심신상의 장애</u>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검사의 퇴직사유	검찰청법 제39조의2
	공수처검사의 퇴직사유	공수처법 제15조
<u>질병, 심신상의 장애</u>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u>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 해촉사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통일교육위원 해촉사유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제6항
<u>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관의 퇴직사유	법원조직법 제47조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문이 법률마다 다를 경우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체계적 관점에서 법문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54개의 법률안을 개정하는 ‘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의 표현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다른 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제처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한 입법 모델에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용¹²⁾하고 있음.

12)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 p.414

○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내용 확인은 본인 신청 및 발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직명령 등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의료기록 등 제공 사유를 신설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인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현행법과 같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임명권자의 판단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이 요구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은 해당 직의 수행기간 동안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하 개별법별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퇴직·해촉·등록 거부 등의 사유로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 법률안별로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함.

3. 개별법 검토

가. 검찰청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는 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 가 중대한 <u>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 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2(<u>사고 등으로 인한 퇴직</u>) -- -----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 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¹³⁾으로 휴직 및 퇴직 등이 「검찰청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휴직을 청원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음¹⁴⁾.

13) 「검찰청법」 제36조(정원·보수 및 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4) 「검찰청법」 제38조(휴직)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검찰청법」 제39조의2는 검사가 휴직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검사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부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반직 국가공무원들도 휴직기간이 끝난 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것¹⁵⁾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검사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해당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없어 「검찰청법」 제39조의2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례¹⁶⁾와 같이

2.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5)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6)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퇴직을 임명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검사(이하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는 사유인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사고 등으로 인한 퇴직) -----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¹⁷⁾으로 「공수처법」에 휴직에 관한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7)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규정은 없으나 「공수처법」이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검찰청법」을 준용¹⁸⁾하고 있으므로,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휴직을 청원하여 공수처 처장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음¹⁹⁾.

- 「공수처법」 제15조는 수사처검사가 휴직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사처 검사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공수처 처장의 제청으로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부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반직 국가공무원들도 휴직기간이 끝난 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것²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18) 「공수처법」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19) 「검찰청법」 제38조(휴직)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해됨.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수사처검사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해당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없어 「공수처법」 제15조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 제21)와 같이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퇴직을 임명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공수처는 현행법 제15조의 공수처 검사 퇴직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수사처검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조장될 우려 불식을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1)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증인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85조(징계위원회) ① ~ ⑥ (생략)	제85조(징계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촉)할 수 있다.	⑦ ----- -----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두고 있음²²⁾.

22) 「공증인법」 제85조(징계위원회)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구성>

구분	인원	대상	임기
위원장	1명	법무부차관	규정X
공무원위원	3명	법무부 실·국장 또는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	2년
일반위원	3명	공증인 1명, 법학교수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 위촉하는 사람 1명	
예비위원	6명	공무원위원 및 일반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명·위촉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합의 또는 표결 방법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으로,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²³⁾.
- 공증인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는데, 위원 개인의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징계 결정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음.

이에 「공증인법」 제85조제7항은 법무부장관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공증인법」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지명철회하거나 해촉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없어 「공증인법」 제85조제7항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공증인 징계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례²⁴⁾와 같이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위원의 해촉 등을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4)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²⁵⁾를 두고 있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인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고²⁶⁾, 위원의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함²⁷⁾).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구분	인원	대상	임기
위원장	1명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 법무부장관 임명	규정X
위원	5명~9명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	2년 연임 가능
상임위원 (위원 중)	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비상임 위원 직위기간)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가 참여하여 합의 또는 표결 방법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²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²⁹⁾을 가지는데, 위원 개인의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능력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가석방 등 결정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음.

이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무부장관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을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례³⁰⁾와 같이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0)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위원의 해촉 등을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3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해촉) ----- -----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³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³²⁾.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

구분	인원	대상	임기
위원장	1명	법무부 차관	규정X
공무원위원 등	6명 이내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	3년 (공무원 아닌 위원만 해당)
일반위원	3명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가 참여하여 합의 또는 표결 방법으로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³³⁾.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³⁴⁾을 가지는데, 위원 개인의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3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3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능력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치료감호 종료 등 결정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음.

이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법무부장관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을 해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례³⁵⁾와 같이

3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중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

35)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위원의 해촉 등을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변호사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등록의 거부 사유와 변호사 징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u>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u>

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u>자</u> 4. ~ 6. (생 략)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3. (생 략) ⑦ (생 략)	<u>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4. ~ 6. (현행과 같음)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심신장애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등에 해당할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³⁶⁾.

36)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변호사 등록제도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나, 변호사 업무 활동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변호사법」 제8조제1항 제3호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 제37)와 같이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등록거부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38)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39)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7)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8) 「변호사법」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예비위원 8명을 두고 있음⁴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구분	인원	대상	임기
위원장	1명	법무부장관	규정X
공무원위원	4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2명,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2년
일반위원	4명	대한변호사협회의장 추천 변호사 1명, 변호사 아닌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예비위원	8명	공무원위원 및 일반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명·위촉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합의 또는 표결 방법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으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⁴¹⁾.

39) 「변호사법」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40) 「변호사법」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1) 「변호사법」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를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는데, 위원 개인의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징계 결정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음.

이에 「변호사법」 제94조제6항은 법무부장관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을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 위원이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어 「변호사법」 제94조제6항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례⁴²⁾와 같이

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위원의 해촉 등을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전문직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부여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업무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등록권자의 사전적인 판단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자⁴³⁾인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법자문사 등록·등록갱신의 거부와 등록 취소 가능 사유인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임.

43) 「외국법자문사법」 제4조(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 ----- ----- ----- ----- ----- ----- ----- -----.
<u>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u>	<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등록취소) ① (생략)	제13조(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 ----- ----- -----.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u>	<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5년 이므로 계속해서 외국법자문사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등록갱신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44),

44)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등록취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외국법자문사 등록제도는 외국법자문사가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나, 외국법자문사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등록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할 경우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유사입법례⁴⁵⁾와 같이 ‘장애’라는 용어를 변경하면서도 등록·등록갱신 거부 및 등록취소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국법자문사법」은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를 의미하는 ‘심신장애(心神障礙)’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 등록·등록갱신 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45)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⁴⁶⁾를 하는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신체적 활동이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새롭게 외국법자문사 등록·등록갱신 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에 신체적 질환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원행정처는 전문직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부여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업무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등록권자의 사전적인 판단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65

46)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참고자료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 제출 현황
--------------	----------------------------------

위원회	주요 개정 법률안 및 개정 대상 법률 개수	개정안 적용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검사, 변호사 등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등 10개	금융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임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등 4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등 6개	사립학교 외부위원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방송통신위원 등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등 2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변경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대통령기록관리전문 위원회 위원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도서관법 등 3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등 4개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위원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무역보험법 등 4개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국립생태원장 및 상임이사 등

참고자료2

개정 대상 규정 중 한글화 이전 心身障礙를 규정한 법률

법률명	해당규정	한글화 이전 규정	한글화 신설 시점
검찰청법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第39條 (心身障礙로 인한 退職) 檢察가 중대한 心身上的 障礙로 職務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退職을 命할 수 있다.	2004. 1.20. (법률 제7078호)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第8條 (登録拒否) ①大韓辯護士協會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登録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録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登録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心身障礙로 인하여 辯護士의 職務를 수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者	2008.3.28. (법률 제899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第9條 (委員의 해임 및 해촉) 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心身障礙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9.5.28. (법률 제9748호)